동래 에코팰리스 아시아드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	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3.04.12. 이전부터 계속 거주)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지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	·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C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4.12.(금)	2024.04.22.(월)	2024.04.23.(화)	2024.04.24.(수)	2024.05.02.(목)	2024.05.07.(화)~ 2024.05.08.(수)	2024.05.13.(월)~ 2024.05.15.(수)

공통 유의사항

1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2844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	금 충족	1순위(6개	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	l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

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 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 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기 기계
= " = " = " = " = " = " = " = " = " = "	문자를 승급시 현승하네 띄금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1702 7711 76-1 20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 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 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 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qkrrleh76)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 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한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0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은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4.12. 입니다. (주택공급신청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주택공급신청자격조건 판단기준일)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호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2023.04.12.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4.22.(월)	2024.04.23.(화)	2024.04.24.(수)	2024.05.02.(목)	2024.05.07.(화) ~ 2024.05.08.(수)	2024.05.13.(월) ~ 2024.05.15.(수)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 (PC·모바일) 청약홈(0 ■ (현장접수) 청약통정	,		■ 분양사무소 [운영시간 (10:00 ~ 16:00) -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 - 문의 : ☎051-503-1110 ※ 서류접수, 계약체결 운영시간은 변경됨	4, 자이언츠파크 301호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 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동래 에코팰리스 아시아드' 분양상담 전화(☎051-503-1110)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공급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화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을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까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까지

■ 중도금대출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조건은 "이자후불제" 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동래구)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이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됩니다.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의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2021.10.26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 정책인「아이.맘 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주택의 48세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2세대)에 대하여 공급금액(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제외)의 5%를 잔금에서 인하(할인)하여 공급합니다.
- 분양가 인하(할인) 규정에 따라 선별된 특별공급 세대 중 정당계약기간 내에 계약한 세대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외 유형(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 무순위, 선착순 등)의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이,맘 부산플랜」의 분양가 인하(할인) 혜택은 해당 세대의 최초 계약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 시에는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단위 : 세대]

	구분	71	80A	80B	84	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	3	3	7	16
『아이.맘 부산플랜』 적용 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6	6	6	14	32
70 711-11	합계		9	9	21	48

-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중 정당 당첨자만을 대상으로「아이 맘 부산플랜」해당세대를 선별하며,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아이 맘 부산플랜」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표와 같이 각 타입별「아이.맘 부산플랜」세대 배정이 되며 각 신청자격별, 타입별 경쟁 발생 시에는 해당 경쟁 유형 추첨 대상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기준으로 분양사무소에서 공개추첨하여 선별하며 (단,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 함) 선별되는 세대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되는 동·호수 추첨과 무관합니다.
- 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 주택형별로 무작위 추첨
- 2) 1)의 낙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형별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아래 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순위별로 무작위 추첨
- 1) 1순위 : 소득기준 우선공급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분
- 2) 2순위 : 1순위에게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소득기준 일반공급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분 (「아이 맘 부산플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5% 미달시에 한함.) 및 1)의 1순위에서 낙첨된 분
- 3) 3순위 : 1)과 2)에 따라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2)에서 낙첨된 자 및 추첨제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분
- ③ 신청자격별 미달 발생으로 배정되지 않은 세대는 경쟁이 발생한 신청자격 추첨 시 주택형별로 배정함
-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른 무작위 추첨 당첨자(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된 자)를 포함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작위 추첨 당첨자는 청약신청시 입력한 소득기준(우선공급/일반공급)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격검증결과 청약신청내역과 상이한 경우「아이.맘 부산플랜」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에 따라 공급비율이 기존 18%에서 13%로 하향 적용되어 공급됩니다.
- 추첨일 :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검수 기간 중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추첨 일정 및 구비서류를 개별 통보 후, 분양사무소에서 공개추첨하여 선별합니다. 추첨 대상자의 착신 불가(수신인의 통화 거절, 스팸 문자 등록, 연락처 변경 등) 및 참석 불가 사유(해외 여행, 병의원 입원 등 일신상의 불참 사유 포함)등으로 인하여 미참석 시, 추첨 불참에 따른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분양가 인하(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4.03.2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래구 건축과-16328호(2024.04.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248-10번지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38층, 1개동 총 160세대

[특별공급 84세대 (기관추천 16세대, 다자녀가구 16세대, 신혼부부 32세대, 생애최초 15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일 : **2027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3

[단위: m², 세대]

주택	즈태과리	주택관리 _{교레}	주택형	약식	주택공급면적(m²)			기타공용면적 계약	세대별	총공급	특별공급 세대수						일바고근	최하층	
구분	보호 번호	모델	(전용면적기준)	표기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지하주차장등)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계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01	071.3388	71	71.3388	29.4674	100.8062	10.9175	111.7236	6.3036	32	3	3	6	3	1	16	16	1
민영	2024	02	080.5484	80A	80.5484	34.3277	114.8761	12.3269	127.2030	7.1174	32	3	3	6	3	1	16	16	1
주택	000167	03	080.9390	80B	80.9390	34.0688	115.0078	12.3866	127.3944	7.1519	32	3	3	6	3	1	16	16	1
		04	084.8732	84	84.8732	34.1707	119.0439	12.9887	132.0326	7.4995	64	7	7	14	6	2	36	28	2
	합계								160	16	16	32	15	5	84	76	5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71.3388	080.5484	080.9390	084.8732
약식표기 주택형	71	80A	80B	84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계약면적 등 합계면적은 소수점 이하 오차 발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물·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로 분배되었으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기반시설(도로 등) 부지 제공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유니									T = 7 man						[단위 : 원]
전실보기						공급금액		계약금(10%)				1(60%)			잔금(30%)
변수 전 1976 전 1		동·호	층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1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약식표기)	J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	소계	계약시	2024.09.15.	2025.01.15.	2025.05.15.	2025.09.15.	2026.01.15.	2026.05.15.	입주지정일
11-15층 4 201328.899 311.711.101 513.04.000 51.304.000 51.304.000 51.304.000 51.304.000 51.304.000 51.304.000 51.304.000 51.304.000 15.304.00			6~7층	2	197,404,665	305,635,335	503,040,000	50,304,000	50,304,000	50,304,000	50,304,000	50,304,000	50,304,000	50,304,000	150,912,000
16-20층 5 203,291,016 314,748,984 518,040,000 51,804,000 51,804,000 51,804,000 51,804,000 51,804,000 51,804,000 51,804,000 51,804,000 52,040,000 53,040,000 54,500			8~10층	3	199,366,782	308,673,218	508,040,000	50,804,000	50,804,000	50,804,000	50,804,000	50,804,000	50,804,000	50,804,000	152,412,000
The color of the			11~15층	4	201,328,899	311,711,101	513,040,000	51,304,000	51,304,000	51,304,000	51,304,000	51,304,000	51,304,000	51,304,000	153,912,000
1-2-2-6 5 205.645.56 318.394.44 324.040.000 52.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4.504.000 5	71	1호	16~20층	5	203,291,016	314,748,984	518,040,000	51,804,000	51,804,000	51,804,000	51,804,000	51,804,000	51,804,000	51,804,000	155,412,000
BANA	/ 1	15	21~25층	5	205,645,556	318,394,444	524,040,000	52,404,000	52,404,000	52,404,000	52,404,000	52,404,000	52,404,000	52,404,000	157,212,000
80A			26~30층	5	207,607,673	321,432,327	529,040,000	52,904,000	52,904,000	52,904,000	52,904,000	52,904,000	52,904,000	52,904,000	158,712,000
용이스 등 등 등 2 218,905,543 338,924,457 557,830,000 55,783,000 55,783,000 55,783,000 55,783,000 55,783,000 55,783,000 55,783,000 56,383,000 58,380,000 58,3			31~35층	5	209,569,790	324,470,210	534,040,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160,212,000
80A			36~38층	3	213,886,447	331,153,553	545,040,000	54,504,000	54,504,000	54,504,000	54,504,000	54,504,000	54,504,000	54,504,000	163,512,000
80A			6~7층	2	218,905,543	338,924,457	557,830,000	55,783,000	55,783,000	55,783,000	55,783,000	55,783,000	55,783,000	55,783,000	167,349,000
80A			8~10층	3	221,260,083	342,569,917	563,830,000	56,383,000	56,383,000	56,383,000	56,383,000	56,383,000	56,383,000	56,383,000	169,149,000
S-Pacific No. S-Pacific N			11~15층	4	222,825,852	344,994,148	567,820,000	56,782,000	56,782,000	56,782,000	56,782,000	56,782,000	56,782,000	56,782,000	170,346,000
Robert Part	804	5古	16~20층	5	224,395,546	347,424,454	571,820,000	57,182,000	57,182,000	57,182,000	57,182,000	57,182,000	57,182,000	57,182,000	171,546,000
1-35층 5 231,451,319 358,348,681 589,800,000 58,980,000 58,980,000 58,980,000 58,980,000 58,980,000 58,980,000 58,980,000 58,980,000 176,940,000	80A	3±	21~25층	5	228,315,856		581,810,000	58,181,000	58,181,000	58,181,000	58,181,000	58,181,000	58,181,000	58,181,000	174,543,000
868 3 237,722,245 368,057,755 605,780,000 60,578,000 60,578,000 60,578,000 60,578,000 60,578,000 60,578,000 60,578,000 60,578,000 60,578,000 60,578,000 60,578,000 181,734,000			26~30층	5	229,881,625	355,918,375	585,800,000	58,580,000	58,580,000	58,580,000	58,580,000	58,580,000	58,580,000	58,580,000	175,740,000
8/8 등 2 219,156,694 339,313,305 55,847,000 55,847,000 55,847,000 55,847,000 55,847,000 55,847,000 55,847,000 55,847,000 55,847,000 56,447,000			31~35층	5	231,451,319	358,348,681	589,800,000	58,980,000	58,980,000	58,980,000	58,980,000	58,980,000	58,980,000	58,980,000	176,940,000
8·**10층 3 221,511,234 342,958,766 564,470,000 56,447,000 57,247,000 57,247,000 57,247,000 57,247,000 57,247,000 57,247,000 57,247,000 57,247,000 57,247,000 57,247,000 57,247,000 57,247,000 57,247,000 57,247,000 57,247,000 58,247				3	237,722,245	368,057,755	605,780,000	60,578,000	60,578,000	60,578,000	60,578,000	60,578,000	60,578,000	60,578,000	181,734,000
80B 원용			6~7층	2	219,156,694		558,470,000	55,847,000	55,847,000	55,847,000	55,847,000	55,847,000	55,847,000	55,847,000	167,541,000
80B 원용			8~10층	3	221,511,234	342,958,766	564,470,000	56,447,000	56,447,000	56,447,000	56,447,000	56,447,000	56,447,000	56,447,000	169,341,000
21~25층 5 228,574,855 353,895,145 582,470,000 58,247,000			11~15층	4	223,080,928	345,389,072	568,470,000	56,847,000	56,847,000	56,847,000	56,847,000	56,847,000	56,847,000	56,847,000	170,541,000
21~25층 5 228,574,855 353,895,145 582,470,000 58,247,000 58,41,00	80B	2ㅎ	16~20층	5	224,650,621	347,819,379	572,470,000	57,247,000	57,247,000	57,247,000	57,247,000	57,247,000	57,247,000	57,247,000	171,741,000
84 84 16층 10 237,659,457 367,960,543 605,620,000 60,962,000 60,962,000 60,962,000 60,962,000 60,962,000 60,962,000 60,962,000 60,962,000 60,962,000 60,962,000 60,962,000 60,962,000 60,960,000 59,047,000 59,047,000 59,047,000 59,047,000 59,047,000 59,047,000 59,047,000 59,047,000 59,047,000 59,047,000 59,047,000 59,047,000 59,047,000 59,047,000 59,047,000 59,047,000 59,047,000 59,0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57,560,000 57,56	ООВ	2-1	21~25층	5	228,574,855	353,895,145	582,470,000	58,247,000	58,247,000	58,247,000	58,247,000	58,247,000	58,247,000	58,247,000	174,741,000
84 84 86,000 26~36층 10 237,659,457 367,960,543 605,620,000 60,620,000 60,962,000 60,962,000 60,962,000 60,962,000 60,560,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8,160			26~30층	5	230,144,549	356,325,451	586,470,000	58,647,000	58,647,000	58,647,000	58,647,000	58,647,000	58,647,000	58,647,000	175,941,000
84			31~35층	5	231,714,242	358,755,758	590,470,000	59,047,000	59,047,000	59,047,000	59,047,000	59,047,000	59,047,000	59,047,000	177,141,000
84 8~10층 6 228,233,447 353,366,553 581,600,000 58,160,			36~38층	3	237,993,017	368,476,983	606,470,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60,647,000	181,941,000
84			6~7층	4	225,878,906	349,721,094	575,60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172,680,000
84			8~10층	6	228,233,447	353,366,553	581,600,000	58,160,000	58,160,000	58,160,000	58,160,000	58,160,000	58,160,000	58,160,000	174,480,000
84 3호,4호 21~25층 10 237,659,457 367,960,543 605,620,000 60,562,000 60,562,000 60,562,000 60,562,000 60,562,000 60,562,000 60,562,000 60,562,000 60,562,000 60,562,000 60,562,000 60,562,000 60,562,000 60,962,000			11~15층	8	230,587,987	357,012,013	587,600,000	58,760,000	58,760,000	58,760,000	58,760,000	58,760,000	58,760,000	58,760,000	176,280,000
21~25층 10 237,659,457 367,960,543 605,620,000 60,562,000 60,962,000	84	3호 4호	16~20층	10	232,942,528	360,657,472	593,600,000	59,360,000	59,360,000	59,360,000	59,360,000	59,360,000	59,360,000	59,360,000	178,080,000
31~35층 10 241,575,842 374,024,158 615,600,000 61,560,000 61,560,000 61,560,000 61,560,000 61,560,000 61,560,000 61,560,000 61,560,000 61,560,000		J,T-	21~25층	10	237,659,457	367,960,543	605,620,000	60,562,000	60,562,000	60,562,000	60,562,000	60,562,000	60,562,000	60,562,000	181,686,000
			26~30층	10	239,229,150	370,390,850	609,620,000	60,962,000	60,962,000	60,962,000	60,962,000	60,962,000	60,962,000	60,962,000	182,886,000
36~38층 6 248,631,615 384,948,385 633,580,000 63,358,000			31~35층	10	241,575,842	374,024,158	615,600,000	61,560,000	61,560,000	61,560,000	61,560,000	61,560,000	61,560,000	61,560,000	184,680,000
			36~38층	6	248,631,615	384,948,385	633,580,000	63,358,000	63,358,000	63,358,000	63,358,000	63,358,000	63,358,000	63,358,000	190,074,000

■ 공통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충별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확장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각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음)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4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7	' 분 (약식표기)	71	80A	80B	84	합계
	국가유공자	-	-	1	2	3
	장기복무제대군인	1	1	-	-	2
기관추천 특별공급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	-	1	2	3
	중소기업근로자	1	1	-	1	3
	장애인(부산광역시)	1	1	1	2	5
다지	녀가구 특별공급	3	3	3	7	16
신	혼부부 특별공급	6	6	6	14	32
생	개최초 특별공급	3	3	3	6	15
노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2	5
	합 계	16	16	16	36	8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용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이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세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및 <i>'</i> 세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우는 특별공급	
고그리즈		구분	처리방법		
공급기준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히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ŀ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F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보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통장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m²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16세대

	구 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		
++1-1-1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추천기관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4-1

구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 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내용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전용면적 85m²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MB84	5 M B	기준	점수	비포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3세대 이상 5 성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세대구성(3)	5	3/11-11 9/8		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20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쉐다 시 ㄷ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부산광역시) 에 입주자모집공고	
해당 시·도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거주기간(5)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입주자저축가입	Г	1013 014	_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	
기간(6)	5	10년 이상	5	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합니다. 단,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유의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전용면적 85m'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32세대

■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아이.맘 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 : 전용면적 85m²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에서 공급함.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	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대상자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신혼부부 주택 특	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 ⁶	백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신생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1단계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37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신생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2단계	(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당첨자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선정방법	4단계	(15%)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2008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5단계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	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③ 지역 : 해당지역 7	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	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비고	- 자녀는 「민법」제8	3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	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4.01. ~ 06.3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미뀰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우선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004,510원~	8,248,468원~	8,775,072원~	9,563,283원~	10,351,494원~	11,139,705원~
신생아일반공급,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8,405,412원~	9,898,161원~	10,530,086원~	11,475,939원~	12,421,793원~	13,367,646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워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워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구문 금액 건 무동산 3억3,100만 (건물+토지) 원 이하

4-4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전용면적 85m²이하 공급세대수의 9% 범위 : 15세대

그브	INΩ
대상자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발·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함 * '단독세대라,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급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4 FL 741	신생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1단계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2단계 	(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비디이 위펴그스트이 저녀드				
3단계	(35%)	세네의 필당판모락이 전단도 	도시근도사 기구권구를 끌당판모극의 130% 이야한 문			
4 C F 241	일반공급	베데이 잉펴그스트이 저녀드				
4단계	(15%)	세네의 필당판모속이 전단도 	도시근도사 기구권구를 끌당한모목의 130% 오피 100% 이야한 문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5단계	추첨공급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인 분			
) 그건게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			
		1천 기구	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②지역: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4.01. ~ 06.3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ш	$\overline{}$
	-11
•	_

	소득구분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추첨공급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4-3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산보유기준 참조)

4-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전용면적 85m²이하 공급세대수의 3% 범위): 5세대

78	III O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②가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당첨자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선정방법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2002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35	1명	10	5명	30
	2 T 0 11 T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③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가입기간	17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 + 2 + 3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	입기간 점수를 합산히	시 않음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잉	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비고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	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	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격	^도 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내경사	입						
청약통장 자격요건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	F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은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여 부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예치금액 이상인 분 	덕 85m 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당첨자 선정방법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도 거주자)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m' 초과 85m'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전	l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0명	5	4명	25
(청약신청자		35	1명	10	5명	30
-	•))	2명	15	6명 이상	35
본인 제외)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입주자저축		본인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17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가입기간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베구시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영약가염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을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 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즈테스오여브 미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	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	으로 함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u>-</u> ι ¬—π~ιΤ	400 X COTE(T 400 M CC II 4) MAX M40 X MDX)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주택처분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기준일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1. 8시크로 1 1의 8위 개념을 대답을 대답을 가는 18시 기업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
주택을	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하지 않은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것으로 보는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A ·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청약신청, 구비서류 및 당첨자 발표안내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일정	2024.04.22.(월)	2024.04.23.(화)	2024.04.24.(수)	2024.05.02.(목)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6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OIHL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 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일반 공급	제3자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08	대리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주택공급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추가사항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주택공급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신고증 또는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영주증을 말함)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주택공급신청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 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청약도움e')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고그다지 처하여스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 조회방법: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2024.05.02(목) ~ 2024.05.11.(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 2024.05.02.(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자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구비서류** (분양사무소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서류	유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특별공급신청서/서약서		• 분양사무소 비치 (특별공급신청서는 분양사무소 청약시 필요)
			720860///17/1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0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공통			0700L1I(71B)=L71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서류	0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 개인정보수집안내
	0		인감증명서 또는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 본인발급용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ol . Thou coo / Eccio ST
	0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발급	
•	0		출입국사실증명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출생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
		0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가조과게즈며서(사세)	배우자	•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0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0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및 세대원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번역공증 첨부 필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의 출입국사실증명 ※ 주택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 체류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0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 해당기관 추천서 (기관 추천 명단 확인으로 대체)
	0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0	한부모가 족 증명서	근진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존속의 배우자 유무 및 세대분리 여부 확인
다자녀가구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 존속	•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T1=111.4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입양관계 증명서	H01 551	• 자녀가 입양인 경우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비구·시	• 분양사무소 비치 / 임신중인 경우
	0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 혼인 신고일, 미성년자녀수, 월평균 소득, 자산 기재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원수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 조회조건에 "전체" 설정,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하여 발급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혼부부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원수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자세한 소득증빙서류는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특별공급		0	비사업자 확인각서	세대원	• 분양사무소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UNEG		• 사실증명 제출시 "신고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전년도 소득이 없는 자에 한함)
		0	사실증명		- 전년도 1월 1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간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세대원 전원	- (월급기전) 대답권 언덕켓증기조(www.iros.go.kr) > 증기월임/월급 > 구중전 > 구중전 소유 연용 (소유 연용이 없는 경우에는 전경 설피) ※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원은 전원 공동인증서 준비 필수
				세네면 근단	* 할입자 구현등학년도 당개에 제고 / 구당한을 보유하지 않는 제계원은 현원 당당인당자 분의 출구 - 자세한 자산증빙서류는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0	입양관계 증명서		• 자녀가 입양인 경우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배우자)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되게비스	• 분양사무소에 비치 / 임신중인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ᄌᇚᄃᄅᇴᆂᆸᄼᅛᆘ	717U7 A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가구원수 산정에서 포함하고자 할 때 제출
		Ο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 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되거요가 취이니		- 1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0		자격요건 확인서	на	• 분양사무소 비치 / 소득세 납부실적, 혼인 유무, 미성년자녀수, 혼인신고일, 월평균 소득, 자산 기재
	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입주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자세한 소득세 납부 증빙서류는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0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구원수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 및	- 조회조건에 "전체" 설정,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하여 발급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원수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10.0-111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자세한 소 득증 빙서류는 "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0	비사업자 확인각서	세네권	• 분양사무소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0	사실증명		• 사실증명 제출시 "신고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전년도 소득이 없는 자에 한함)
생애최초		O	\\ 200 		- 전년도 1월 1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간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특별공급			7 102 1120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제출
	0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O			※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원은 전원 공동인증서 준비 필수
					- 자세한 자산증빙서류는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0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 자녀가 입양인 경우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포 근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메구시)	• 분양사무소에 비치 / 임신중인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이상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가구원수 산정에서 포함하고자 할 때 제출
		0	주민 등록 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 1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0		가점 산정 기준표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 한국부동산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ᄌᇚᄃᄅᄑᆂᆸᄼᅛᄓ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
노부모 부양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기조기계조머니/사네b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특별공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0		+017/1177		•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기록대조일 : 출생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0	주민등 록 표초본(상세)		• 만 30세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 직계비속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출생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손자녀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손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제3자	0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 불가 -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인 신청	0		인감도장	(주택공급 신청자)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시	0		위임장	[[[[[[[[[[[[[[[[[[[[• 분양사무소 비치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0		신분증 /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자필서명 또는 인장날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분양사무소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신청 주택공급신청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분양사무소 방문접수가(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직인날인)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직인날인)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해당직장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자영업자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중이어야 함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사망합사	법인대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제무재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직장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일용근로소득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세무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분양사무소 비치세무서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소득증빙서류는 홈택스 발급 및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자격입증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무서
기본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1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건강보험공단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소득금액증명(근로자 및 자영업자) 및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제출) ※ 결정세액이 환급확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or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세무서해당직장세무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근로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인날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일 경우 일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예정) 신고서 (단, 금액이 – 또는 0일 경우 소득세 납부이력으로 불인정)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인, 프리랜서 등):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지급조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6, 2018, 2019, 2022, 2023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부동산소유현황 및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결과(건축물 소유자) 토지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 종합증명서(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재산세 과세내역(주택 외 건축물의 경우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울 경우)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이택스(서울) 및 위택스(서울 외) 일사편리
	해당자	• 농지대장 • 축산업 허가증 • 토지이용계획서	행정복지센터지자체 축산과토지이음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1	'보도사 사이 취하이 어느 거이		- "신청하신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함	•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단위) : 재산세 없음을 증빙해야함	• 행정복지센터(인터넷발급은 전국단위 발급 안됨)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필수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 일정 및 장소

- 서류접수 일정: 2024.05.07.(화) ~ 2024.05.08.(수)
- 접수장소: 분양사무소 [운영시간 (10:00 ~ 16:00) ※ 서류접수, 계약체결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 자이언츠파크 301호 / 문의: ☎051-503-1110

■ 자격확인 제출서류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루	유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0		서약서		• 분양사무소 비치		
	0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분양사무소 비치 / 개인정보수집안내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발급용 필수		
	0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부산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		
			TCO=###C(O/II)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공통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발급		
서류	0		출입국사실증명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출생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0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	•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 기급레이용시(이제)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0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국내기업 •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의 출입국사실증명 ※ 주택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 체류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О		가점 산정 기준표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Ο	순위확인서	배우자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군귀적 인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0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경심시골 확인시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	
			TCO¬##E(O/II)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0	 가 족 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0 기급인(60시(6시)	7'1112 7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일반공급		0	출입국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 록대조일 : 출생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가점제)			<u> </u>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직계존속의	•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Tale 3 - + H. H. H.	배우자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 만 30세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ᄎᅁᄀᆡᄭᄌᄜ	TINUL A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Ο	출입국사실증명	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출생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손자녀	• 보이에 어려의 국계에국을 구경기국으로 인경된고자 이는 경구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적격		0	가속전계증명시(경제) 부적격 사유에 따른	근시너	• 구보기 보수 사랑인 논사녀들 수당기속으로 인정받고사 이는 성수
무색석 소명자		0	구역적 자유에 따른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자료
70/1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 불가
제3자	0		인감증명서	주택 공급 신청	• 용도 : 무곡중요단장 위점증(본건골요중 골푸) ※ 본건시용시골속간시 세울시 내내 울기 -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인	0		인감도장	구역 공 급신성 자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신청 시	0		위임장	<u>'</u>	• 분양사무소 비치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0			대리인	• 눈용자구도 마시 / 구력등급전용자의 전염도용 할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자필서명 또는 인장날인
	U		신분증 / 인장	네디언	• 구진중국중 또는 군인인역중, 역년(2020.12.21. 역은 인상철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8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당첨자 계약 체결	2024.05.13.(월)~2024.05.15.(수)	• '동래 에코팰리스 아시아드' 분양사무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 자이언츠파크 301호	☎ 051-503-1110
경염자 계약 제월	10:00~16:00 (3일간)	※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개별 안내 예정	2051-505-1110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분양사무소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서	류유형		발급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0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사전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본인 계약 시	0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0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쉐다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에 6시	
	0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본인	※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0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대리인 계약 시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본인 이외)	0		신분증 /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자필서명 또는 인장날인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만 인정합니다.(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아파트 계약용으로 사용 불가)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④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분양사무소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분양사무소 및 사업지 인근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인·허가 도서에 준하며 시공하며,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탁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 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후납"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 상적 이행 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 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후불제)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 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가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에 대한 공급대금 및 연체료 등을 완납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분양사무소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인지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체결 시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아래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 ※ 과세기준별 인지세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ㅣ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ㅣ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ㅣ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ㅣ 10억원 초과 : 35만원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 납부 안내					
대상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체결 대상					
납부기한 [분양계약]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 및 구입 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 구입 및 결재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등)에 첨부					
비구 # TU 3U	- 우체국, 은행 방문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등)에 첨부					

- ※ 2022.12.31.「인지세법」제8조 일부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022.12.31. 「국세기본법」제47조의4조제9항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산은행	113-2017-7696-03	우리자산신탁(주)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 불가)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관한 안내

- 사업주체 (주)지민건설은 상기 분양대상물을 분양함에 있어 우리자산신탁(주)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든 분양금은 계약서에 명기된 우리자산신탁(주)("입주금관리협약"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주)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공동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계좌) 명의의 "분양수입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수입금계좌"에 수납되지 아니한 어떠한 납부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주)지민건설에게 있으며, 우리자산신탁(주)는 본 사업의 자금관리대리사무 수임자로서 매도인 (주)지민건설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금관리업무(계좌 개설 및 통장 보관 / 매도인 (주)지민건설의 요청[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인(입주금관리협약에 따라 공동관리하는 경우) 및 (주)부산은행의 동의]에 따른 자금집행을 수행하며,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책임(소유권이전의무, 하자담보책임, 분양대금 반환의무

등)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주체인 (주)지민건설이 부담하며, 우리자산신탁(주)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본 조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다른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10 입주 관련 안내 및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의2**
- 입주자 사전방문은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 45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입주예정일 : 2027년 02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요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시설) 등으로 구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11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	<u>'</u> 일정	нэ
(약식표기)	<u> </u>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비고
71	9,900,000	990,000	8,910,000	
80A	11,000,000	1,100,000	9,900,000	
80B	11,000,000	1,100,000	9,900,000	
84	11,550,000	1,155,000	10,395,000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부산은행	113-2017-7698-06	우리자산신탁(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분양사무소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양사무소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시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L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0.2.18.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은 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추가선택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의 외부창호는 이중창호(침실1 발코니 등이 비확장의 경우 외기면 단창호)로 설치되며, 창호 및 도어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형 세대에서 주방 발코니의 경우 내부에 터닝도어, 외부에 단창호가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침실1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는 단열 및 난방 공간이 아니므로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설치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 상부에 상부층 세대의 배수배관 및 당해층 세대의 환기덕트가 노출로 시공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 등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제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창호 주변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외 추가옵션 에 관한 사항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 등의 추가옵션계약은 향후 진행(예정)하며, 계약자에게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카탈로그 기준(침실명은 확장형 평면 기준)이며,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상기 표기는 설계도서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은 확장형 평면 기준으로만 제공되며 타입에 따라 제공유무가 상이함.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서는 향후 소비자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적정 시점에 추가 선택품목 계약 행사를 검토 중이고, 이에 따라 상기 추가 선택품목 이외의 선택품목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 계약 행사 이전에 계약자를 대상으로 공지할 예정임(일부 마감자재 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은 상부세대 비확장 시 천장부위의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커텐박스 / 등박스 /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등이 축소·변경될 수 있으며, 하부세대 비확장 시 바닥 판넬히팅 구조는 확장 형 기준층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추가 선택품목은 본공사 시 제조사, 형태 및 컬러가 변경될 수 있음. 추가 선택품목은 타입별로 형태 및 사이즈, 내부구성이 상이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		나타게지 나타이저 미 게야이저요 ᄎㅎ 벋ㄷ 아비 에저	·-·
우가 신넥움족(옵션) 급두세와		납부계좌, 납부일정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주체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옵션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 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향후 고지할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옵션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 국 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12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공통	일반사항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본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면에 명기되는 면적, 치수 등은 실제 시공 과정에서 일부 경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사업 부지면적 등은 법령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내 대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기계식주차장 등)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되, 위치의 지정이나 분할을 요구하지 않으며, 시설에 따라서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별도 분양예정임)의 다른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 수익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경계 및 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주지연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사업지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건축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에 대한 금원 확보와 금액 관리는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신탁사,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예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 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일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단지명,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명칭 인.허가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부대복리시설, 근리생활시설, 단지 외부시설물 등은 심의 의견 및 인허가 승인 조건, 공사여건, 특화디자인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설계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위치 및 면적, 개소, 형태 등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없이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 조건(건축허가, 건축심의, 전문위원회심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 협의결과 조건, 관계 기관 심의결과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수 식재계획과 조경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마감재료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와 인접한 아시아드대로, 도시철도 미남역 등으로 인해 차량 및 도시철도 운행에 의한 소음, 진동, 먼지,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경계 바깥의 도로, 인근 상가 및 주택가 등의 현황은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지 주변 • 사업지 주변에 존치건물 등이 인접하여 주변 소음, 먼지, 분진, 조망권, 세대간섭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황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 도로계획 및 도로관련 시설물 등은 별도 인 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 부지와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의 방편으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위의 개발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본공사 시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하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설계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 등 시기 조정, 급당인원 변경, 설립계획 보류(취소) 결정 등 향후 여건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설립계획 및 학교수용계획 등은 해당 관청의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서파	• 초등학교 배치는 인근 금강초등학교, 중학교 배치는 온천중학교, 부산내성중학교에 배치는 가능하나 학교 배정 및 계획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관할로 추후 학교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수종, 테마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등의 동선계획 및 단지 내의 경사로, 단차 처리방안, 조경 계획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층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선 위치는 담당 인·허가청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 및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로 진입하는 비상차량 동선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입주자 차량 외 지상으로 진입 가능한 차량은 소방, 치안, 이사, 폐기물 수거차량 등 입주민 공공이익과 관련된 차량만 진입 가능하며 개별 사유로 지상에 차량 진입이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실과 협의하여 진입하여야 합니다.
		• 소형 우편(택배)차량은 지하1층으로 진입이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 도로와 단지 내 도로와의 인접 또는 레벨차이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물(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재활용 분리수거장, D/A(환기구), 자전거 보관소, 주차장 램프 지붕 등) 등은 위치, 디자인 및 재질, 구조,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재활용 분리수거장으로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수거차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그릴창, 제연용그릴창, 옥외 계단, 옥외 경사로 및 지하 또는 지상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휀룸 등은 본공사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의 배치구조,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경공간 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지	단지계획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기계·전기실, 환기창, D/A(환기구) 등)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이 주거동의 전·후·측면 등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 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건축 인·허가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공사 시 규모, 위치,
		게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시설 주변에는 재활용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환기구) 등이 설치되며, 저층세대 발코니 전 후면 하부에 휀룸, D/A(환기구)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상세 위치는 설계도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비주거 부분의 옥상 및 단지 주변에는 에어컨 실외기, 급배기, 환기휀, 기계장비,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등에 의해 일부 세대는 눈부심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 ● 인지 대회부의 자연 및 교자도, 왕인모도, 자연기도도, 모도 등은 안이가 결과에 따다 결정된 것으로서 함의도 제조성할 수 없습니다. ○ ● 외부 조경 식재 및 시설물(녹지, 잔디, 수목, 전기·통신시설물(공용·외부조명 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물, 보도·차도 포장재, 수목관리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써,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발생비용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각 동 외부에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7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단지의 배치 특성상 향별 충별 차이 세대 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 2. 본 아파트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 3. 공공장소인 조경공간과 동별 주출입구, 부대시설, D/A(환기구),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4.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휀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환기구)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시선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외 시설물(출입구, 주차출입구, 경비실, 부대시설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야간조명,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재활용 분리수거장은 지상1층에 설치되며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해당 시설의 설비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배관이 아파트 공용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설치 상세계획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권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탑 일부구간 설치되는 경관조명과 외벽에 설치되는 조명형 사인물로 인해 및 반사,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은 동별 일부 직각배치로 계획되어 있어 서로 마주보는 일부 세대는 사생활권(프라이버시 등)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단지 배치도 및 분양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각 동 일부 세대 전 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불빛에 의해 조망권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간섭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식주차장, 부대시설 등 이용에 대해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 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출입구,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에는 도로 레벨에 맞춰 계단, 경사로, 수직형리프트 등이 위치마다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고, 인·허가조건 및 관련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에 출입구 레벨 및 출입방법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출입구,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옆·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해 소음 발생과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며, 상부층은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층 옥상수조.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 등으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펌프 작동에 의한 일부 저층세대의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및 관리사무소 등으로 인해 소음 및 조망간섭, 사생활(프라이버시 등), 음식물 냄새 등 각 종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붕 및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기계식주차장(주차타워) 배기팬, 경관조명, 공용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 소음, 진동, 기타 등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차량 출입구와 인접한 동의 저층부는 램프를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에 인접한 세대는 상가 옥상층 지붕 및 난간 등에 의하여 조망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옥상에 인접한 세대는 방범상 취약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 부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공용홀 내 창호의 개수와 크기가 주동마다 상이하므로 채광 및 환기가 불리한 세대가 발생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충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동별

		• 주동 외부특화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외부 창호의 형태, 재질, 크기, 색상 및 루버의 위치 및 크기 등은 심의 의견 및 인·허가 승인 조건, 공사여건, 특화디자인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외관계획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외관 및 색채, 마감, 동출입구 및 저층부 석재(또는 석재뿜칠) 패턴, 옥탑, 헬리포트, 경관조명, 부대시설 외관 등의 세부 디자인은 단지 외관 차별화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측벽의 B/I 설치 개수 및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별도 마감재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동의 외벽에 부착되는 사인물, 장식물은 분양홍보물 등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옹벽, 석축,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본공사 시 설계, 시공성, 편의성, 구조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지하3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기계식주차장(주차타워, 지하1층과 지하2층에 진출입구 위치)이 설치되어 기계식주차장 운행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용도별, 세대별, 동별로 면적분할이나 위치 지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계식주차장(주차타워)은 사용승인 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전장, 전폭, 전고 또는 중량 등 해당 제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차로의 유효높이 2.3m이상(주차공간은 2.1m이상) 확보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층별, 구간별 높이는 일부
		상이할 수 있고, 본공사 시 레벨 변경 및 각종 배관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높이 일부 구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 진입 출입구 및 지하1층 차로의 유효높이는 2.3m가 확보되어 소형 택배차량의 진출입이 불가하며 주차장 유효높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유효높이는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형차(차량 높이 2.3m 이상) 등의 진입이 불가능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진출입구는 1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진출입 시 혼잡하거나 대기차량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계획상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의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으로 승하차 시 이용에 불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을 실로 사용하거나 면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공동주택용(부대복리시설용 등 포함), 근린생활시설용의 각종 배선, 배관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본공사 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 수량 및 사양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공동주택 부지 내에 지역정압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및 지상14층에는 피난안전구역(대피공간), 휀룸, 제연휀룸, 소방용 고가수조, 소방용펌프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의 침해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동 옥상층에 소방용 휀이 설치되어 일부 고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0114	•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휀룸 등은 본공사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용시설	• 발전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발전기가 가동되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전기공급과 관련,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본 아파트 부지 내 지상 한전개폐기 설치 및 부지 무상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 사업구세가 당대에 전기공입과 원인, 사업구시 및 무인시획의 전기공입을 위하여 본 아파트 구시 내 사당 언전개페가 일시 및 구시 구당 제공을 하게 될 경구 업무에당시의 중의가 있는 것으로 가주합니다.
		- 전구합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거, 응전, 팬들 등의 전급 위치 및 구호구 메진의 위치가 구우 전쟁을 구 있습니다. • MDF실 및 방재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일부 장비 및 서버는 시설별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며,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 및 전기요금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 MDF을 꽃 당세을 당을 당당으로 서당함에 따라 골두 당마 꽃 사마는 사물을 당당으로 사용하게 되며, 규지 한다에 대한 마음 꽃 전기요라는 문다가 물가당합니다. • TPS(통신실)는 필요한 층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법적 시설로서 그 위치 및 면적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S(용언필)은 필요한 등이다 글자기에 났으며, 답극 자물로서 그 위치 꽃 한국에 대해 확진하시기 마답다다. • 단지 내 CCTV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외부창호는 입면분할 창호(주방은 미서기창)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동 창호는 구조 계산 결과에 따라 본공사 시 형태 및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창호	• 입면분할 창호 설치에 따른 주동 창호 특성상 이삿짐 운반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창호 등은 구조 계산 결과에 따라 형태 및 재질,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분양홍보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방화문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기본 제공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청약 및 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히
	평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동일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홍보물 등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 단위세대 실내 천장고는 거실기준 2.4m이며, 실외기 및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과 욕실, 현관의 천장고는 각각 상이합니다.
	• 본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세대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의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 배관은 세대 천장, 발코니 천장, PD 등을 관통하여 외부에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침실등이 침실 중심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
	•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천장에는 상부층 세대의 하향식피난구 및 사다리가 시공됩니다.
	• 피난공간의 칸막이벽 및 도어의 철거 등 임의 변경은 불가하고 피난공간 내부에는 상부층 세대의 피난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적재물 등의 보관이 불가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등의 천정에 별도의 마감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의 천장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력기와 필화기가 필시되는 중단 모든 필요리에 무단이 필시되는 것은 개월될 중파가 필경될 수 있으니 중단 본가 및 모든 요시 중 압구시의 현중한 현리가 필요압되다. ● 세대내 가구장 상부 몰딩 및 복도 아트월 및 시트판넬의 형태는 본공사 시 마감 개선을 위해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기구성 경구 필경 및 목도 에트필 및 시트인필의 형태는 환경시 시 대답 개인을 위해 디자인이 한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수전 위치는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어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수납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온수분배기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음)
	• 세대 내부의 가구(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욕실장 후면 본 타일 미시공, 붙박이장, 신발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바닥 마감재 미시공 등)
	• 세대 내부의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경, 비틀림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공간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침 방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 등이 있을 수 있음)
	• 주방상판은 제품 특성상 조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 및 나눔 부위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 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대피공간 도어, 발코니 도어 등)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개폐방향
가구,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포인트 타일 요철로 인해 줄눈마감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아트월, 현관바닥, 욕실, 다용도실 바닥 등의 타일 나누기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 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욕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에 시공되는 공장 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단지 내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및 붙박이장 하부에는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덕트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상부장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점검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기계설비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_ · · · e -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할데 엄럽부는 할머리자 등의 표시한다할 위에 부당이 중점할 수 있으며, 사랑 및 위사가 한경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침실(출입문 뒤편) 중 한 곳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테 만난면 ᄎ 오면 면까요를 마라올림픽 파란/ 오 전 첫째 글까지막, 돈이까 하 글까까지는 한경을 푸 졌답되다.

		•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제어 스위치 기능 중 가스차단 기능을 실행할 경우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복구를 할 경우에는 주방에서 입주자가 직접 수동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호출기능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호출기능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유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 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방 빌트인 가전류, 현관 중문, 침실 붙박이장 등)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위치 및 설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침실에 적용되는 전자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제어의 통합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제어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바닥배수구, 오수배관 입상, 수전금구류, 악세사리류, 위생도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네트워크 월패드, 주방TV, 욕실폰의 전화 수신 기능은 국선전화를 가입한 세대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급수급탕 분배기는 욕실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급수, 급탕 분배기 설치부위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되며, 본공사 시 시공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세탁실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 세탁배수 배관은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하부세대에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 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설비 마감재(분전반, 통신단자함,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주방TV 등)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IOT/홈네트워크 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전용 인터넷 회선 설치 비용 등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
		• 홈IoT/가전기기 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를 설치하여야 하며(통신사 무관),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IoT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loT서비스업체 제공)에서 세대 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제어가 가능하며, l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스마트 가전제품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IoT 서비스 제공업체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함)
	loT	• 홈IOT 서비스 사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검사(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동별사용검사일 포함)을 기준으로 IOT서비스 제공업체의 무상서비스 기간(24개월 또는 36개월 — IOT서비스 제공업체
	101	정책에 따라 상이함)이 지난 날부터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 예정입니다. (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
		• 음성인식 서비스는 홈IoT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음성인식 스피커를, 가전제어 서비스는 홈IoT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가전기기를 각각 입주자의 부담으로 별도로 구매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상기 음성인식 스피커와 가전기기는 제조사, 제품의 사양 및 모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홈IOT 서비스, 음성인식 서비스 및 가전제어 서비스는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일부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서비스의 제공이 종료될 수 있고, IOT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업정책에
		따라 3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IoT서비스 제공업체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 IoT 서비스는 입주자와 IoT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관계이며, 시공사는 기본 인프라만 제공하는 것으로 IoT 서비스에 대한 내용 및 기술지원은 IoT 서비스 제공업체에 확인바랍니다.
		• 단지 네트워크망과 연동하는 IoT 서비스 업체는 본공사 시 선정 예정이며(가전사 또는 이동통신사 중 1개사), 선정된 업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 집기는 본공사 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기본 제공 품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은 공간, 기본 마감재 및 내부 집기류 일부가 제공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 관리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사가 시공하므로 마감재 및 기본 제공 품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의 일부 공간은 입주시 A/S센터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구조, 창호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까하나서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지 내 그리새하나서요 병도의 보안되었습니 전문 기업으로 선생범경이나 대표되면 병경은 요구한 스 언어면 고도주택다되어 병도구하여 보기했다는 향후 간 대표되면에 따로 구한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내 외 옥상부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홍보물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과 외부도로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 출입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이용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지상1층~지상5층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입간판은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승인권자와의 사전협의 후(지침준수 등) 설치하여야 함)
- 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3 기타 계약자 안내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15조1항 및「주택법 시행령」제27조4항1호에 따라「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 및「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미대상입니다.
- 본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으로「주택법」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표시 미대상입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구분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구획의 높이
지하1층	2.3m	2.3m	2.1m
지하2층 ~ 지하3층	2.3m	2.3m	2.1m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건축	전기/소방/정보통신	설비
상호	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영남㈜	㈜중앙기술단	㈜골드이엔지
금액	990,000,000	220,000,000	41,25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2312024-104-0000300 호	₩ 64,670,844,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 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 2개 이상 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함.
-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 분	사업주체 (시행사)	시공사	자금관리 대리사무
	㈜지민건설	㈜금오종합건설	우리자산신탁㈜
주 소	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 12, 10층 1003호(덕천동, 이수빌딩)	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 12, 10층 (덕천동, 금오종합건설사옥(이수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법인등록번호	180111-1312048	180111-0389402	110111-2003236

■ 기타 유의사항

- 모든 부동산 계약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3항에 의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건축허가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소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분양사무소 위치 및 분양문의 : '동래 에코팰리스 아시아드' 홍보관(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 자이언츠파크 301호) / ☎051-503-1110
-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qkrrleh76)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주택공급신청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